

해양수산부 통보

제 목 연구·교습어장 사업시 용선비 적정단가기준 마련 필요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경상남도 ○○○○사업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 기술개발·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수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및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표 1]과 같이 연구·교습어장 신규 및 계속과제를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연구·교습어장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연도	부서명	사업비(천원)			사업 내역
		계	국비	지방비	
2013	계	185,000	185,000	-	
	○○사무소	19,000	19,000	-	새조개 인공종묘 육성 및 양식 산업화
		13,000	13,000	-	미더덕 인공종묘 산업화를 위한 현장 적용 기술개발
	○○사무소	13,000	13,000	-	사천만 백합자원 복원 시험 사업
	○○사무소	20,000	20,000	-	견내량 돌미역 자원회복을 위한 미역양식
		50,000	50,000	-	바윗굴 수하식 양식의 효율적 양성방법 시험
	○○사무소	10,000	10,000	-	피조개 인공종묘 추계 살포에 따른 현장 적용 시험
		37,000	37,000	-	흰명게(오만둥이)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양성시험
○○사무소	23,000	23,000	-	새고막과 피조개의 혼합살포 시험양식	
2014	계	155,194	155,194	-	
	○○사무소	35,194	35,194	-	미더덕 인공종묘 산업화를 위한 현장 적용 기술개발

	○○사무소	18,000	18,000	-	사천만 백합자원 복원 시험 사업
	○○사무소	25,000	25,000	-	견내량 돌미역 자원회복을 위한 미역양식
		30,000	30,000	-	바윗굴 수하식 양식의 효율적 양성방법 시험
	○○사무소	27,000	27,000	-	흰명게(오만둥이)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양성시험
	○○사무소	20,000	20,000	-	새고막과 피조개의 혼합살포 시험양식
2015	계	187,000	130,900	56,100	
	○○사무소	24,000	16,800	7,200	미더덕 인공종묘 산업화를 위한 현장 적용 기술개발
	○○사무소	50,000	35,000	15,000	삼천포해역 개조개 양식 시범사업
	○○사무소	30,000	21,000	9,000	비단가리비 자연채묘 및 양성 시험
	○○사무소	38,000	26,600	11,400	철갑상어 해수양식 시범사업
	○○사무소	45,000	31,500	13,500	새고막 종패털이 자동화 기기 개발
2016	계	164,000	114,800	49,200	
	○○사무소	45,000	31,500	13,500	진해만 키조개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사무소	13,000	9,100	3,900	삼천포해역 개조개 양식 시범사업
	○○사무소	30,000	21,000	9,000	비단가리비 자연채묘 및 양성 시험
	○○사무소	36,000	25,200	10,800	철갑상어 해수양식 시범사업
	○○사무소	40,000	28,000	12,000	새고막 종패털이 자동화 기기 개발

경상남도 ○사업소 소속 ○○사무소 등 5개 소속 사무소에서는 연구·교습
 여장 운영·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선박을 임차하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
 사무소(2016년 단가기준 적용), ○○사무소(2016년 단가기준), ○○사무소(2016년
 단가기준), ○○사무소(2014년 단가기준) 및 ○○사무소((2014년 단가기준)에서는
 각각 관내 시장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용선비 기준을 마련하
 여 운영하고 있다.

[표 2] ○○○○사업소 등 용선비 기준

부서명	선박(4시간 미만)/천원				선박(4시간 이상)/천원				일 반 작업대	패류 채취용 작업대
	1톤미만	1~3톤 미만	3~5톤 미만	5~7톤 미만	1톤미만	1~3톤 미만	3~5톤 미만	5~7톤 미만		
○○사무소		200	300			250	350			
○○사무소		200								
○○사무소	210	320	370	510	310	420	550	770	220	390
○○사무소							300		150	
○○사무소						260	340 (4~6톤)	400 (7~10톤)	200	

[표 2]를 살펴보면, 1~3톤 미만 선박을 4시간 미만 임차할 경우 ○○사무소 및 ○○사무소는 200천원, ○○사무소는 320천원, 4시간 이상 임차할 경우 ○○사무소는 250천원, ○○사무소는 260천원, ○○사무소는 420천원으로 사무소별 용선비 단가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용선비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무소별 단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선비 적정단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어업용이 아닌 연구·교습어장 운영·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선박을 임차할 경우에는 어업용 면세유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어선을 임차할 경우 선주에게 이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 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선비 적정단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 ② 공무수행을 위한 어선 임차시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선주에게 이를 고지하는 등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